

<보도자료>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촉구 기자회견

- 주최 :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
- 날짜 : 2015년 7월 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 제목 :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 촉구 기자회견
- 담당 : 김혜진(416연대 운영위원, 010-4538-0051)

1. 기자회견 취지

-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대책위원회]는 4.16연대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전교조, 조계종노동위원회 등이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함께 만든 대책위원회입니다.
- 세월호에서 희생되신 단원고 정규직 선생님들과는 달리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인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도록 요구한 바 있고, 고등법원에서도 기간제 선생님은 ‘교육공무원’이며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의 유족들은 6월 23일 순직인정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절차에 따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저희 대책위원회에서는 인사혁신처가 두 분 선생님의 순직인정을 수용해야 하며 교육부도 마땅히 순직을 인정하는 입장을 내놓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미 6월 29일부터 두 분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서명운동과 함께 책임부서에서 순직 인정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2. 기자회견 주요 순서

-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유족 발언
-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발언
- 두 분 선생님 순직 인정과 관련한 대한변협의 법률의견
- 기간제 교사 차별의 문제점에 대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의 입장
-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전교조 발언
-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종교계 발언

3. 자료

- 기자회견문
- 법률단체 입장서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에서 숨져간 304명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 죽음에 대해 그 누구도 함부로 모욕해서는 안 되며, 그 누구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세월호에서 희생된 11명의 선생님 중에서 두 분의 죽음은 차별을 당하고 있다. 아직 수습되지 못한 두 분 선생님을 제외한 7명의 정규직 선생님들이 순직 인정을 받았는데,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경우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선생님이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서 기간제 교사도 교원으로 명시하고 있고, 제2조 1항도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두 명의 기간제 선생님은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서 규정한 ‘상시공무’에 종사하는 분들이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법률의견서에서 두 분의 선생님이 당연히 순직 대상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두 분 선생님은 가장 빠져나오기 쉬운 세월호 5층 객실에 있다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고 결국 구조되지 못한 채 숨졌다. 단원고등학교 전 교장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고 당시 상황보고서’에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다. 담임선생님으로서 정규직 교사와 다름 없이 아이들을 가르쳐왔고, 죽음의 순간까지 아이들과 함께했던 분들이다. 그 어떤 이유로도 두 분의 죽음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6월 23일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유족이 세월호참사 1년만에 순직 신청을 했다. 수많은 시민들이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서명을 진

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두 분 교사의 순직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69명의 국회의원들도 기간제 선생님 순직인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법률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두 분의 순직 인정을 위한 공동대응을 시작했다. 차별 없는 애도를 위한 모두의 마음이다.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라. 공무원연금 관리공단도 두 분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 기간제 선생님에 대한 차별적 관행과 유권해석에 매달려서 순직인정을 거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의 차별은 없어야 한다.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대책위원회”는 두 분의 유족들,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순직 인정 과정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15년 7월 1일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대책위원회
(4.16연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계종노동위원회)

大韓辯護士協會

☎135-784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18층 대한변협회관(역삼동) ☎ 02-2087-7714 FAX: 02-3476-4008
담당과: 총무과, 과장: 조원희, 담당: 직원 허정희, E-mail: jhheo@koreanbar.or.kr 홈페이지: www.koreanbar.or.kr

문서번호 총무 제 3012호

시행일자 2015. 6. 22.

발 음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참 조 연금보상실

제 목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의 공무원연금법 적용에 관한 의견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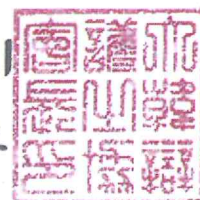
1.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변협은 귀 공단에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의 공무원 연금법 적용'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협회 의견을 제시하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의 공무원 연금법 적용'에 관한 의견 1부. <끝>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하 창 우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의 공무원연금법 적용에 관한 대한변협 의견서

1. 사실관계

경기도교육청이 작성한 2014. 5. 20.자 <단원고 사망 실종 교원 명예 추서 및 유족 보호 방안>, 故 이지혜의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에 관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서류 반려> 회신, 故 유니나의 유족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순직유족급여 청구에 대한 결정 통보>, 故 이지혜·故 김초원 유족의 진술, 관련 언론 기사 등을 토대로 파악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공립 단원고등학교 교사 11명(교감 제외) 중에는 기간제 교사 2명이 포함
- 故 김초원은 기간제 교사로서 2학년 3반 담임을, 故 이지혜는 기간제 교사로서 2학년 7반 담임을 맡아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 및 동료 교사들과 함께 사망
- 경기도 교육청은 사망한 단원고등학교 정교사들의 유족에게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사망·순직 인정 절차를 안내했지만, 기간제교사인 故 김초원·故 이지혜의 유족에게는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절차를 안내
-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신청을 한 정교사 7명 전원(실종 교사의 유족은 아직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을 신청하지 아니함)에 대해 공무상 사망 및 순직이 인정
- 기간제 교사인 故 이지혜의 유족이 낸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은 동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였던 故 '이지혜'님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청구서류 일체를 경기도교육청으로 반려하였음"을 통보

2. 쟁점 사항

「공무원연금법」 제56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며, 공무원이었던 자가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2.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3.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재직 중 공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공무상 부상을 당하여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되, 순직공무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제56조제4항의 순직유족연금 외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이 사안의 경우 수학여행을 가는 도중 사망한 것은 재직 중 공무로 사망

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故 이지혜·故 김초원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임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정교사 전원에 대해서는 순직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故 김초원·故 이지혜에 대해서도 순직 사유를 인정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공단은, 기간제 교사는 (순직)유족연금 및 (순진)유족급여의 지급 요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들고 있으며,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순직)유족연금 및 (순진)유족급여를 받는 데에 문제가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인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3. 사안의 검토

가. 공무원의 정의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급여의 지급 요건인 공무원에 관해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는 “공무원”이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②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가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급여의 지급 요건인 공무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 기간제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동법 제32조(기간제교원)제1항·제2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이렇게 임용된 교원을 기간제교원이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3항은 기간제교원 역시 교원임을 전제로 기간제교원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의 일부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교사 역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즉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이 정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원 역시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간제교원도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이므로 교육과학기술교육부장관이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작성함에 있어서 기간제교원들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기간제교원들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기간제교원들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보수청구권, 구체적으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서 규정된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2012. 6. 25. 선고 2011가단170494 판결). 이 사건의 항소심도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교원임이 명백하므로 교육공무원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은 기간제교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2나31498 판결).

다. 기간제 교사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에 관해 「공무원연금법」은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는 문리적 해석 및 여타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간제 교사 역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1) '상시 공무'라 함은 '평소 보통 이루어지는 공무'를 뜻하는 바, 해당 업무의 본질적 속성이 한시성·이례성을 띠고 있는 공무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의 경우 비록 근무 기간은 특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간제 교사가 담당하는 정규 수업 및 교육 관련 사무는 평소 보통 이루어지는 공무라 할 것이므로 기간제 교사 역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담임은 대표적인 교육 관련 상시 공무로서,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는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할 것입니다.

2) 대법원은, '상시 근로자'인지 여부를 당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일용근로자들 역시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¹⁾. 이 기준에 의하면 기간제 교사라 하더라도 상

1)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관해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사업자)이라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고, 또 그 적용대상인 사업(또는 사업장)에는 계절적이거나 일정기의 사업(또는 사업장)도 이에 포함된다고 하여야 함이 근로기준법의 근본정신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은 이와 반대의 취지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일용근로자들은 판시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없다고 단정하였음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조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대법원 1987.4.14. 선고 87도153 판결)

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3) '기획재정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2013. 2. 6.자 기획재정부 훈령 제133호) 제2조제2항은 "기간제근로자란 무기계약근로자는 아니나 상시적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같은 맥락에서 기간제 교사는 비록 근무기간에 기간의 정함을 두고 있지만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자라고 할 것입니다.

4) 만약 '기간제'가 '상시 공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을 뜻하는 것이라면 기간제교원을 포함한 계약직 공무원 모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도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계약직공무원규정'(대통령령)은 계약직공무원을 '일반계약직공무원'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구분하고, '계약직공무원업무처리지침'은 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을 적용 받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故 김초원·故 이지혜 모두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근무하였습니다.

라. 기간제교원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의 해석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3항은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 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 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 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기간제교원에 대한 적용 배제 법률에 「공무원연금법」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의 근거가 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7조 “공무원이 질병·부상·폐질(廢疾)·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으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역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반대해석상 「국가공무원법」 제77조는 기간제교원에 적용되고 이를 근거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기간제 교사는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육공무원법」이 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며, 기간제 교사에 대해 적용을 배제하는 법령 조항에 유족급여에 관한 조항 및 「공무원연금법」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故 김초원·故 이지혜의 유족은 「공무원연금법」의 (순직)유족급여 및 (순직)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